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JP 모간 아세안 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JP 모간 아세안 증권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JP 모간 아세안 증권투자신탁(주식) (75073)
2. 집합투자기구 분류	투자신탁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 / 개방형 / 추가형 / 종류형 / 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홈페이지 : www.jpmorganam.co.kr ☎ 758-5200
4.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jpmorgana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성기준일	2015 년 12 월 15 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5 년 12 월 17 일
7.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증권의 종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증권의 수: 이 투자신탁은 모집(매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8. 모집 또는 매출 기간(판매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판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9. 존속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존속하는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는 미국 Internal Revenue Code에 따른 미국인(United States person)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될 수 없으며, 이 때 미국인에는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신탁 또는 조합 및 미국인이 지배하는 특정한 비미국(non-US) 투자회사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미국인에 대한 더 자세한 정의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연금클래스(CP클래스, CP-E클래스, S-P클래스, P클래스)의 투자자는 미국인 투자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이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파생상품에 투자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집합투자업자의 예상과 다른 부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7.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대부분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화자산에 투자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10.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1.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실수령금액이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2. 모집합투자기구 및/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분산투자가 어렵거나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협의하여 펀드의 임의해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을 고려하시어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를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이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해외의 자산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기재가 곤란하여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4. 미국 해외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이후 수령된 특정한 미국원천 지급금, 2016년 12월 31일 이후 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미국자산 매각수익 총액 및 2017년부터 비미국 당사자로부터의 특정 "해외도관 지급금(foreign passthru payments)"에 대하여 30%의 미국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모집합투자기구 및 이 집합투자기구가 FATCA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투자목적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회원국에 설립 또는 상장되었거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관련 수혜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여 장기적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 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주요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른 주된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설명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60%이상	JP 모간 아세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JP 모간 아세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신탁계약에 따른 주된 투자 대상 및 투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설명
해외주식	60%이상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회원국에 설립 또는 상장되었거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증권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증서로서 "주식"의 성질을 구비한 것 ("해외주식")

주)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한도 및 투자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모투자신탁인 JP모간 아세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합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JP모간 아세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 설립 또는 상장되었거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 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외화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는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의 계열회사인 **JPMorgan Asse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에게 위탁됩니다.

다.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외화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일반적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자산 가치는 환율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참조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의 최대 100%까지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원화)로 환헷지하고자 합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참조통화와 외화자산의 통화 간의 헷지를 수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해외위탁투자업자는 언제든지 전적인 재량 하에 외화자산의 통화를 참조통화로 헷지 할 수 있습니다. 환율 위험에 대한 헷지는 참조통화로 표시된 자산 가치 및/또는 외화자산의 통화 노출의 100%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헷지는 일반적으로 장외 통화선도거래 및 외환스왑계약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기초 통화가 유동성이 없거나 또는 다른 통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헷징 기법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환헷지가 외화자산의 통화 및/또는 참조통화에 대하여 수행되는 경우 이러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된 모든 비용, 그 결과 관련 수익 또는 손실은 각각 모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에 귀속됩니다.

투자자는 환헷지가 정확한 헷지를 제공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환헷지가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대부분의 기초자산의 통화는 참조통화 이외의 통화이므로 기초자산의 관련 통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투자신탁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적합한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의 변경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 수익자에게의 통보 등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MSCI AC South East Asia TRN Index(USD)95% + 콜금리5%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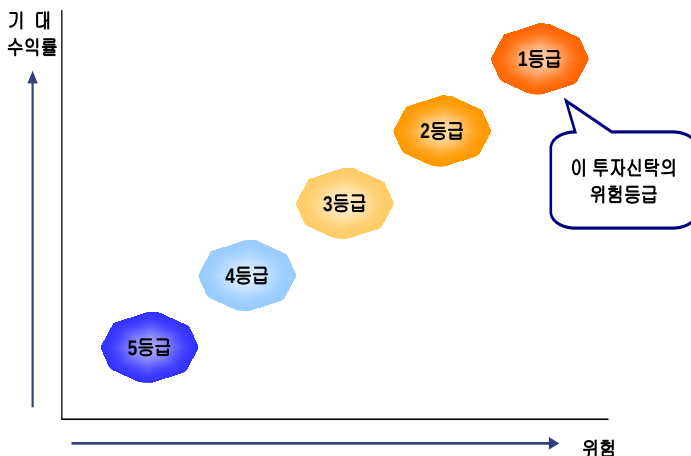
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하여 본 문서의 작성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모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시장위험 및 투자신탁위험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헷지위험 / 환율변동위험 / 통화위험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국가위험 / 신흥시장위험 / 분산 위험 / 변동성위험 / 법률, 세금 및 규정등 제도적 위험 /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 미국 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신고제도(FATCA) /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위험 /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기타 투자위험**(유동성 위험 / 순자산가치변동위험 / 펀드규모위험 / 오퍼레이션 위험 / 환매연기위험 / 해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상기의 위험은 투자의사 결정시 참고하여야 할 모든 위험이나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니며, 향후 투자환경의 변화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임을 투자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투자대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변동성이 높은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므로 5등급 중 위험수준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합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증권집합투자기구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혼합형 증권집합투자기구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대상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주 1)}

성명	출생 년도	직위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현황 (2015.09.30)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수탁고)	
기준환	1968	본부장	35개	약 6,305억원	- 미시간 대학교 - 동서증권, 동원증권, 동부화재, CJ자산운용 -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원화자산의 운용을 책임지는 자를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전문인력^{주2)}

성 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Pauline Ng	-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in Singapore - AllianzDresdner Asset Management - 2005 년 JPMorgan Asse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입사

주2) 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 주도적·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6.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기간	4 년차 (10.10.19~11.10.18)	5 년차 (11.10.19~12.10.18)	6 년차 (12.10.19~13.10.18)	7 년차 (13.10.19~14.10.18)	8 년차 (14.10.19~15.10.18)
A 클래스	-6.95%	22.30%	11.11%	-2.68%	-11.82%
C1 클래스	-7.38%	21.72%	10.61%	-3.16%	-12.26%
C-E 클래스	-7.17%	22.03%	10.94%	-2.71%	-11.82%
비교지수	-4.94%	19.57%	3.90%	-0.83%	-12.13%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클래스)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납입금액의 1.20% 이내 ^{주1)}	-	해당사항 없음
A-E	납입금액의 0.50% 이내 ^{주1)}	-	
S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 금액의 0.15%이내 ^{주2)}	
C1	-	-	
C2	-	-	
C3	-	-	
C4	-	-	

C5	-	-	
C-F	-	-	
C-I	-	-	
C-W	-	-	
C-E	-	-	
CP	-	-	
CP-E	-	-	
S-P	-	-	
P	-	-	
지급시기	매수시	환매시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위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위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주2) 후취판매수수료는 위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위 범위내에서 후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에서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으며 이익분배에 따른 재투자 좌수의 환매분에 대하여는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 자보수	판매 회사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 회사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비율	증권거래비용
A	0.85	1.00	0.06	0.025	0.938	2.873	0.217
A-E	0.85	0.50	0.06	0.025	-	1.435	-
S	0.85	0.35	0.06	0.025	-	1.285	-
C1	0.85	1.50	0.06	0.025	0.943	3.378	0.218
C2	0.85	1.40	0.06	0.025	0.944	3.279	0.262
C3	0.85	1.30	0.06	0.025	0.935	3.170	0.173
C4	0.85	1.20	0.06	0.025	0.966	3.101	0.277
C5	0.85	1.10	0.06	0.025	0.937	2.972	0.217
C-F	0.85	0.04	0.06	0.025	-	0.975	-
C-I	0.85	0.30	0.06	0.025	-	1.235	-
C-W	0.85	-	0.06	0.025	-	0.935	-
C-E	0.85	1.00	0.06	0.025	0.937	2.872	0.217
CP	0.85	0.80	0.06	0.025	-	1.735	-
CP-E	0.85	0.40	0.06	0.025	-	1.335	-
S-P	0.85	0.20	0.06	0.025	-	1.135	-
P	0.85	0.75	0.06	0.025	-	1.685	-
지급시기	매 3개월 후 지급				사유 발생시	-	사유 발생시

주)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비용,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가.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이 분배하는 이익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 및 평가 이익은 거주자 개인의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P/CP-E/S-P/P 클래스 가입자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하여, 이하 '연금계좌'라 합니다)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과세합니다. 관련 사항은 판매회사의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설정약관" 또는 관련 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금계좌 납입 총액 연 1,800만원 한도
연금수령 요건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 -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다만, 이연퇴직소득은 제외) -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
세액공제	연간 400 만원 이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함)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단,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 연금소득으로 과세, 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 연령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원칙적 종합과세이나, 의료목적 등 인출액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며, 그 외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연금소득으로 무조건 과세,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연금외 수령시 과세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 기타소득으로 과세, 세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퇴직소득으로 과세, 이연퇴직소득세

다. 미국인 수익자에 대한 과세

미국 세법(US Internal Revenue Code, the "IRC")상 본 집합투자기구는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에 속합니다. 미국 세법상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에 관한 조항은 미국 투자자(수동적 투자회사에 직접 투자하거나 또는 그 회사의 보관회사나 판매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동적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미국 투자자들은 IRC § 1296에 따라 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시가 평가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거나 IRC §1294에 따라 본 집합투자기구를 Qualified Electing Fund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본 집합투자기구는 수동적 투자회사에 관한 정보를 미국인 수익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연금계좌와 관련된 과세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정부 정책의 변경 및 개별 가입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고,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1,000좌당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 및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합니다.
공시시기	집합투자업자는 통보받은 기준가격을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매일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www.jpmorganam.co.kr)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www.kofia.or.kr)에 공시합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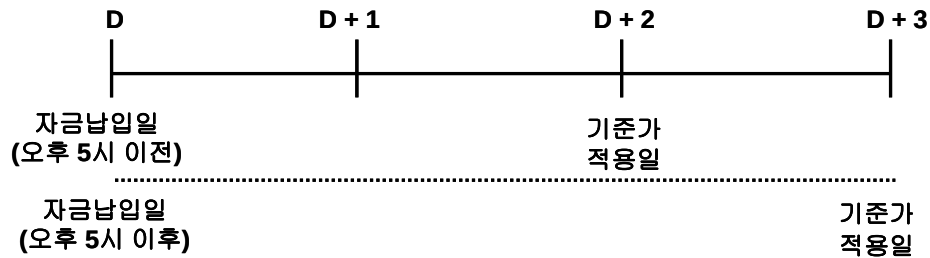
(1) 매입

종류 (클래스)	가입자격
----------	------

A 클래스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A-E 클래스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며,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S 클래스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고, 후취판매수수료는 징구하며,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C1 클래스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2 클래스	제 2 부. 11. 다. 수익증권의 전환에 따라 C2 클래스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C3 클래스	제 2 부. 11. 다. 수익증권의 전환에 따라 C3 클래스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C4 클래스	제 2 부. 11. 다. 수익증권의 전환에 따라 C4 클래스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C5 클래스	제 2 부. 11. 다. 수익증권의 전환에 따라 C5 클래스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C-F 클래스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부터 제 18 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최초 납입금액 100 억원 이상 일반법인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I 클래스	최초 납입금액 100 억이상 개인 또는 50 억이상 100 억미만 일반법인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W 클래스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E 클래스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으며,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CP 클래스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하여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P-E 클래스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S-P 클래스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P 클래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에 한하여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 투자자가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판매회사에 납입한 경우: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납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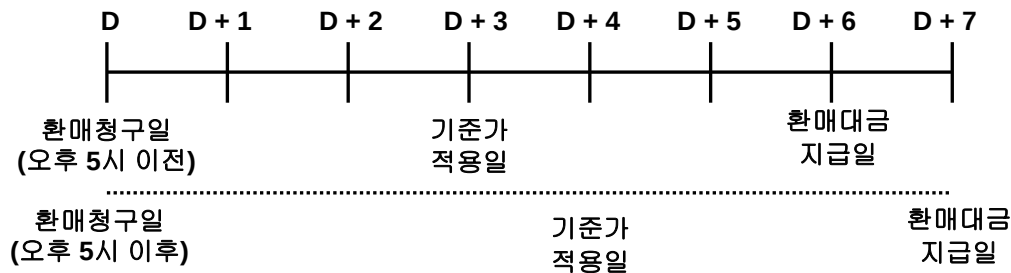
- 투자자가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판매회사에 납입한 경우: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납입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2) 환매

- 수익자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D+6)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수익자가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Ⅲ. 요약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제 8 기 20140627-20150626	제 7 기 20130627-20140626	제 6 기 20120627-20130626
I. 운용자산	372,135,690,114	757,916,809,231	1,114,858,810,184
증권	370,290,239,633	754,145,350,550	1,109,244,999,538
현금 및 예치금	1,845,450,481	3,771,458,681	5,613,810,646
II. 기타자산	3,257,524,869	7,007,402,927	7,367,802,430
자산총계	375,393,214,983	764,924,212,158	1,122,226,612,614
II. 기타부채	3,301,506,465	7,111,193,834	7,490,913,169
부채총계	3,301,506,465	7,111,193,834	7,490,913,169
I. 원본	447,623,984,787	984,655,681,526	1,556,179,526,458
II. 수익조정금	129,421,376,212	126,147,461,811	100,623,988,035
III. 이익잉여금	-204,953,652,481	-352,990,125,013	-542,067,815,048
자본총계	372,091,708,518	757,813,018,324	1,114,735,699,445
I. 운용수익	31,657,057,670	106,939,962,458	26,099,424,425
이자수익	44,583,073	102,817,410	165,605,602
매매/평가차익(손)	31,593,769,888	106,793,184,231	25,816,307,772
기타이익	18,704,709	43,960,817	117,511,051
II. 운용비용	9,765,035,363	18,486,260,458	26,200,060,184
관련회사보수	9,744,077,783	18,448,825,388	26,148,756,054
기타비용	20,957,580	37,435,070	51,304,130
III. 당기 순이익	21,892,022,307	88,453,702,000	-100,635,759